

변경대비표

[신탁계약서]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NH-Amundi Allset 성장 중소형주 증권투자신탁[주식]**
2. 효력발생일 : 2020 년 8 월 28 일
3. 정정사유:
 - 클래스 추가(S-P2(퇴직연금)클래스)
 - 클래스 명칭 변경(S-P → S-P1(연금저축))
 - 펀드명칭 변경(Allset 삭제)
 - 종류별 가입자격 추가(Class Cw)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시 손해배상 관련 조항 추가)
4. 정정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p>① 이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은 "NH-Amundi Allset 성장 중소형주 증권투자신탁[주식]"이라 한다.</p> <p>② (생략)</p> <p>③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 (생략)</p> <p>Class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p> <p>Class S-P</p> <p>(이하생략) <신설></p>	<p>①이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은 "NH-Amundi 성장 중소형주 증권투자신탁[주식]"이라 한다.</p> <p>② <u>(현행과 동일)</u></p> <p>③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 <u>(현행과 동일)</u></p> <p>Class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계좌를 보유한 자 <u>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보유한 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u></p> <p><u>Class S-P1(연금저축)</u> <종류형 집합투자기구 명칭변경></p> <p><u>(현행과 같음)</u></p> <p><u>Class S-P2(퇴직연금):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인 경우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수익증권)</u></p>
제10조(수익증권의	1~16. (생략)	1~16. (현행과 같음)

발행 및 전자등록)	17. Class S-P 수익증권 18. <신설>	17. Class S-P1(연금저축) 18. Class S-P2(퇴직연금)
제24조의 2(수익증권의 판매기준)	<p>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p> <p>- (생략)</p> <p>Class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p> <p>Class S-P</p> <p><신설></p>	<p>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p> <p>- (현행과 동일)</p> <p>Class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계좌를 보유한 자 <u>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보유한 자</u>,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p> <p><u>Class S-P1(연금저축)</u> <u><종류형 집합투자기금 명칭변경></u></p> <p><u>Class S-P2(퇴직연금):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인 경우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수익증권)</u></p>
제39조(보수)	(생략) Class S-P 수익증권 <신설>	<u>(현행과 같음)</u> <u>Class S-P1(연금저축) 수익증권</u> <u>Class S-P2(퇴직연금) 수익증권</u>
제40조(판매수수료)	<p>①(생략)</p> <p>② 선취로 취득하는 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16. (생략)</p> <p>17. Class S-P 수익증권</p> <p>18. <신설></p>	<p>①(현행과 같음)</p> <p>② 선취로 취득하는 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u>1~16. (현행과 같음)</u></p> <p><u>17. Class S-P1(연금저축)</u></p> <p><u>18. Class S-P2(퇴직연금)</u></p>
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p>① ~ ③ (생략)</p> <p>④ <신설></p>	<p><u>① ~ ③ (현행과 동일)</u></p> <p><u>④ 제2항 및 제3항 이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제1항에 따라 변경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손실보상(혹은 손해배상)을 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손실보상(혹은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u></p>

		<p>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p> <p>1. <u>손실보상(혹은 손해배상)액</u>: 신탁계약에서 정한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집합투자업자 혹은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전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65일 동안 매일을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365일로 나눈 금액)에 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기간 동안 보수율이 변경된 경우 수익자총회 개최 직전일의 보수율을 적용한다.</p> <p>2. <u>보상기간</u>: 365일 (다만,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변경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p> <p>3. <u>지급시기</u>: 변경일 전일</p>
<p>제52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p>	<p>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Class C-P1(연금저축), Class C-P1e(연금저축), Class S-P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p>	<p>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Class C-P1(연금저축), Class C-P1e(연금저축), Class S-P1(연금저축)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p>
<p>부칙</p>	<p>-</p>	<p><u>부칙</u> (변경시행일) 이 변경신탁계약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변경대비표

[투자설명서]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NH-Amundi Allset 성장 중소형주 증권투자신탁[주식]**
2. 효력발생일 : 2020년 8월 28일
3. 정정사유:
 - 클래스 추가(S-P2(퇴직연금)클래스)
 - 클래스 명칭 변경(S-P → S-P1(연금저축))
 - 펀드명칭 변경(Allset 삭제)
 - 종류별 가입자격 변경(Class Cw)
 - 비교지수 변경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시 손해배상 관련 조항 추가)

4. 정정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요약정보 투자실적추이 (연평균 수익률)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 명칭: NH-Amundi <u>Allset</u> 성장 중소형주 증권투자신탁[주식] (주1) 비교지수 : [KOSPI중형주 x (W주1) + KOSPI소형주 x (1-W)](100%)	집합투자기구 명칭: <u>NH-Amundi 성장 중소 형주 증권투자신탁[주식]</u> (주1) <u>2020.08.28 이후</u> [KOSPI 중형주* (70%) + KOSDAQ* (30%)]
제1부/제2부. 1. 집 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NH-Amundi <u>Allset</u> 성장 중소형주 증권투자신탁[주식] - (종략) - Class S-P 수익증권 - <신설>	집합투자기구 명칭: <u>NH-Amundi 성장 중소 형주 증권투자신탁[주식]</u> - (현행과 동일) - Class S-P1(연금저축)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 직연금))
제2부. 6. 집합투자 기구의 구조 11. (3) 종류별 모 집제한	(2) 종류형 구조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 Class Cw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 Class S-P 수익증권	(2) 종류형 구조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 Class Cw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계좌를 보유한 자 <u> </u> 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보유한 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 Class S-P1(연금저축) 수익증권

	<p>- <신설></p>	<p><종류형 집합투자기구 명칭변경></p> <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인 경우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수익증권)</p>
<p>제2부. 9. 가.(3) 투자신탁의 비교지수 (벤치마크)</p>	<p>[KOSPI중형주 x (W주1) + KOSPI소형주 x (1-W)](100%)</p> <p>주1) $W = \frac{\text{KOSPI중형주 시가총액}}{\text{KOSPI중형주 시가총액} + \text{KOSPI소형주 시가총액}}$</p> <p>※ {KOSPI중형주 x (W주1) + KOSPI소형주 x (1-W)}: KOSPI 중형주 지수 구성종목과 KOSPI 소형주 지수 구성종목의 종목별 시가총액을 각 지수 전체의 시가총액 (KOSPI 중형주 지수 시가총액 + KOSPI 소형주 지수 시가총액)으로 나누어 비중을 구하여 합산한 지수</p>	<p>[KOSPI 중형주* (70%) + KOSDAQ* (30%)]</p> <p>※ KOSPI 중형주지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종목 중 시가총액 101위부터 300위까지 200개 종목으로 산출하는 지수이며, KOSDAQ 지수는 코스닥시장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코스닥에 상장된 보통주를 구성종목으로 하여 산출·발표되는 지수입니다. KOSPI 중형주지수 및 KOSDAQ 지수는 www.krx.co.kr 에서 확인가능합니다.</p>
<p>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	<p>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p> <p>- <신설></p>	<p>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1(연금저축))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p>
<p>제3부. 3.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기준)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p>	<p>(주1) [KOSPI중형주 x (W주1) + KOSPI소형주 x (1-W)](100%)</p>	<p>(주1) 2020.08.28 이후 [KOSPI 중형주* (70%) + KOSDAQ* (30%)]</p>
<p>제5부 1.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p>	<p>1. ~ 5. (생략) <신설></p>	<p>1. ~ 5. (현행과 동일)</p> <p>* 집합투자계약 제44조제2항 및 제3항 이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제44조제1항에 따라 변경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손실보상(혹은 손해배상)을 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손실보상(혹은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손실보상(혹은 손해배상) 액: 신탁계약에서 정한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집합투자업자 혹은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전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65일 동안 매일을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365일로 나눈 금액)에 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신탁계약기간 동안 보수율이 변경된 경우 수익자총회 개최 직전일의 보수율을 적용합니다.</u> 2. <u>보상기간: 365일 (다만,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변경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u> 3. <u>지급시기: 변경일 전일</u>
--	--	--

변경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NH-Amundi Allset 성장 중소형주 증권투자신탁[주식]**
2. 효력발생일 : 2020년 8월 28일
3. 정정사유:
 - 클래스 추가(S-P2(퇴직연금)클래스)
 - 클래스 명칭 변경(S-P → S-P1(연금저축))
 - 펀드명칭 변경(Allset 삭제)
 - 종류별 가입자격 변경(Class Cw)
 - 비교지수 변경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시 손해배상 관련 조항 추가)

4. 정정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요약정보	집합투자기구 명칭: NH-Amundi <u>Allset</u> 성장 중소형주 증권투자신탁[주식]	집합투자기구 명칭: <u>NH-Amundi 성장 중소형주 증권투자신탁[주식]</u>
투자실적추이 (연평균 수익률)	(주1) 비교지수 : [KOSPI중형주 x (W주1) + KOSPI소형주 x (1-W)](100%)	(주1) <u>2020.08.28 이후</u> [KOSPI 중형주* (70%) + KOSDAQ* (30%)]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